



제439회 국회 (정기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제출 요청자료 기준 마련〉

■ 김예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706호)

2026. 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국립장애인 도서관의 제출 요청자료 기준 마련(안 제24조제3항)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예지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 2026. 4. 29.
3. 회 부 일 : 2026. 4. 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 제작 및 서비스 제공 업무에 필요한 경우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로 제출할 것으로 요청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요청을 받은 자가 점역·음성 변환 등 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제작에 적합하지 아니한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를 제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대체자료 제작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장애인이 도서관자료를 시의적절하게 이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국립장애인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도서관자료 접근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3항).

III. 검토의견

1. 국립장애인 도서관의 제출 요청자료 기준 마련 (안 제24조제3항)

개정안은 국립장애인도서관이 도서관자료 발행·제작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현 행	개 정 안
제24조(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치 등)	제24조(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치 등)
① · ② (생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제2항제3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이를 <u>디지털파일</u> 형태의 도서관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립장애인도서관에 <u>디지털파일</u> 형태의 도서관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 ----- -----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디지털파일-- ----- ----- ----- -----해당 디지털파일----- -----.
④ · ⑤ (생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현행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제작·제작지원 및 이용서비스 제공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디지털 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¹⁾

현행법 시행령 제21조제5항²⁾은 디지털파일자료의 제출에 필요한 사

1) 「도서관법」

제24조(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치 등) ① 지식정보 취약계층 중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장애인도서관을 둔다.

②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시책 수립 및 총괄
2.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기준 및 지침의 제정
3.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제작·제작지원 및 이용서비스 제공
4. 도서관자료에 대한 장애인 및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장애인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의 접근 보장 및 이용 편의 제공
5.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표준 제정·평가·검정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6.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공유 시스템 구축 및 공동 활용
7.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및 특수설비의 연구·개발 및 보급
8.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을 위한 도서관서비스의 연구·개발 및 보급
9. 장애인의 지식정보 이용을 위한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10. 장애인의 도서관서비스를 담당하는 전문직원 교육
11. 장애인의 도서관서비스를 위한 국내외 도서관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
12. 그 밖에 장애인에게 필요한 도서관서비스에 관한 업무

③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제2항제3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이를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립장애인도서관에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제3항에 따라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지체 없이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제출한 도서관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 그 도서관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조직 및 운영, 제3항에 따른 제출, 제4항에 따른 증명서 발급 및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도서관법 시행령」

제21조(국립장애인도서관에 대한 디지털파일자료 제출) ① 법 제24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4조제3항 전단에 따라 제출할 것을 요청받은 디지털파일자료가 해킹 또는 컴퓨터바이러스 등으로 손상되거나 삭제된 경우
2. 디지털파일자료와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②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는 법 제24조제3항 후단에 따라 디지털파일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도서관자료 제출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디지털파일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이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보상청구서

항을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 보상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서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를 “「도서관법」 시행령 제15조제1항³⁾의 도서관자료 중 중 컴퓨터를 이용하여 점자, 디지털음성, 한국수화언어 등으로 용이하게 변환할 수 있는 .txt, .doc, .hwp, .pdf, .epub 등의 파일”로 정의⁴⁾하고 있음.

이렇게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 자료의 구체적인 기준이 법령이 아닌 고시에 규정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언급

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③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국립장애인도서관의 관장(이하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이라 한다)은 법 제24조제3항 후단에 따라 디지털파일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도서관자료 제출증명서를 발급하고, 보상 청구에 관한 정보를 알려 주어야 한다.

④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정당한 보상의 기준은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디지털파일자료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3) 「도서관법 시행령」

제15조(도서관자료의 납본)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는 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를 제외한다. 다만,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는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도서관자료로 한다.

1. 도서
2. 연속간행물
3. 악보, 지도 및 가제식(加除式: 끼우고 뺄 수 있는 방식을 말한다) 자료
4. 마이크로형태(microform: 인쇄물이나 그래픽을 사진이나 전자 방식으로 아주 작게 축소한 형태 또는 매체를 말한다)의 자료 및 전자자료
5. 슬라이드, 음반, 카세트테이프, 비디오물 등 시청각자료
6.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전자출판물 중 콤팩트디스크, 디지털비디오디스크 등 유형물
7. 점자자료, 녹음자료 및 큰활자자료 등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8. 출판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형태로 발간되는 기록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도서관자료

4)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 보상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 「도서관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는 “「도서관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의 도서관자료 중 컴퓨터를 이용하여 점자, 디지털음성, 한국수화언어 등으로 용이하게 변환할 수 있는 .txt, .doc, .hwp, .pdf, .epub 등의 파일”을 말한다.

한 바와 같이 디지털 파일을 제출하는 출판사 등이 데이터 추출이 어려운 파일을 제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한편,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제출받은 디지털파일을 기반으로 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⁵⁾를 제작하게 되는데, 국립장애인도서관에 따르면 데이지자료(디지털음성도서)의 경우 자료 제작에 20일에서 40일이 소요된다고 함.

이와 같이 장애인 대체자료 제작은 기본적으로 시간이 소요되는데, 출판사 등이 대체자료로 용이하게 변환할 수 있는 디지털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대체자료 제작 시간이 지연되어 대체자료를 이용하기 위하여 제작을 신청한 장애인이 도서관자료를 시의적절하게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됨.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출판사 등이 제출해야 하는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 자료의 구체적인 기준을 고시에서 시행규칙으로 상향하고, 법률에 그 위임근거를 명시하여 장애인의 지식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정보에 평등하게 접근하기 위한 취지의 입법으

5) 대체자료란 장애로 인해 인쇄물, 전자자료 등 도서관 자료를 읽을 수 없는 장애인들을 위해 접근 가능한 형태로 변환하거나 접근 기능을 지원한 자료를 의미하며, 그 종류로는 전자점자도서, 전자점자악보, 데이지자료(디지털음성도서), 화면해설영상자료, 수어변환자료, 발달장애인을 위한 읽기 쉬운 자료 등으로 구분됨.

출처 : 국립장애인도서관 홈페이지(<https://www.nld.go.kr/home/alternativeMaterialGuide.do>)

로 이해됨.

특히,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 자료 제출 요청 대비 제출율이 70% 수준에 불과한 상황인데, 개정안이 입법화 될 경우 출판사 등이 제출해야 하는 디지털파일의 기준 및 형식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제출율이 보다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장애인 대체자료 제작을 위한 디지털파일 제출 현황 >

연도	제출요청		제출			미제출		
	출판사	건수	출판사	건수	비율	출판사	건수	비율
2021	494	938	284	614	65.5%	210	324	34.5%
2022	467	1,080	290	801	74.2%	177	279	25.8%
2023	482	1,195	281	920	77.0%	201	275	23.0%
2024	400	997	219	714	71.6%	181	283	28.4%

※ 자료 : 「국립장애인도서관 연보 2024」

아울러, 개정안은 장애인이 정보를 이용하고 접근함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한다고 규정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6)를 뒷받침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인간으로서의 존엄

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①개인·법인·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개인 등”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장애인 관련자로서 한국수어 통역, 점역, 점자교정, 낭독, 대필, 안내 등을 위하여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등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들의 활동을 강제·방해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과 가치를 구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규정을 통해 장애인의 도서관자료 접근성을 강화하려는 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현재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에 대한 기준은 법 제24조제3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5항에 따라 국립장애인도서관 고시로 정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개정안의 자구를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이 고시로 정하는 디지털파일”의 제출을 요청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또한,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디지털파일 제출 형태는 전자출판 및 문서작성 환경, 대체자료 제작 기술 변화에 따라 수시 보완이 필요한 세부·기술적 기준에 해당하므로, 이를 부령으로 상향 규정할 경우 기준 변경의 신속성과 유연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대체자료 제작에 적합한 디지털파일 형태의 세부 기준은 현행과 같이 국립장애인도서관 고시로 정하도록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아울러, 한국도서관협회는 디지털파일 형태에 대한 세부 기준은 기술 변화와 제작환경 변화에 따라 신속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라는 점에서, 현행과 같이 국립장애인도서관 고시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따라서, 개정안에 대하여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와 함께 관계기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384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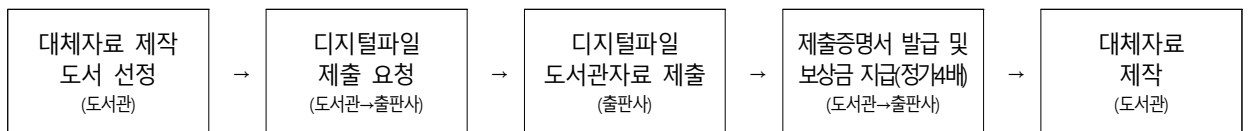
디지털파일 제출 및 대체자료 제작 현황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운영 현황

- (개요) 「도서관법」 제24조제3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국립장애인도서관고시」 제2023-1호에 따라, 대체자료 제작 시 필요한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를 제출 요청
- (대상자료) 제출 요청 대상 자료는 「국립장애인도서관 장서개발지침」에 따름
 - ① 이용자신청 : 대학생을 위한 전공교재를 비롯하여 평생학습, 취업 등을 위한 각종 수험서, 자격증 관련 도서 등('23년 3,405건, '24년 3,560건, '25년 3,040건)
 - ② 장서개발형 : 지식문화유산적 및 교육 학술적 가치의 제공, 교양습득 및 정서 함양, 생활정보 입수, 잠재적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한 다양한 분야의 도서('23년 586건, '24년 680건, '25년 1,862건)
- (제출형태) 「국립장애인도서관고시」 제2023-1호 제3조에 따라 도서관 자료 중 컴퓨터를 이용하여 점자, 디지털음성, 한국수화언어 등으로 용이하게 변환할 수 있는 .txt, .doc, .hwp, .pdf, .epub 등의 파일

* 제3조에 따른 파일 형태가 아닌 경우, 다시 요청하여 제출받거나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제2조에 따른 보상금 미지급

○ (제출절차)



- (제출현황) '21년 6월 국립장애인도서관 1차 기관 승격 후 총 5,797건 제출

구분	제출 건수(건)	제출 형태					
		.txt	.doc	.hwp	.pdf*	.epub	기타 (.indd 외)
2021. 6 ~ 12.	210	1	0	11	193	4	1
2022	801	1	1	17	724	31	27
2023	1,756	0	0	7	768	928	53
2024	1,441	1	2	8	695	717	18
2025	1,589	0	4	5	583	972	25
합계	5,797	3	7	48	2,963	2,652	124

* pdf : 파일 안에 포함된 글자 및 표 등의 추출 및 편집이 가능한 pdf(이미지 pdf는 제외)